고령군 고시 제2026-57호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(경미한변경) 및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

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-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『주택법』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경을 승인(경미한변경) 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30일

고 령 군 수

1. **사업명 :**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-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

2. **사업주체**

가. 명칭 및 대표자 :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국형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, 섬유센터 7층(대치동)

3. **사업개요(변경 있음)**

1) 위 치 :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-1번지 일원

2) 대지면적 : 15,360㎡(도로공제 84㎡ 미포함)

4) 건축면적 : 2,075.8902㎡

4) 연 면 적 : 75,019.7847㎡

4) 규 모 : 지하 4층 ~ 지상 39층

4) 구 조 : 철근콘크리트 혼합구조(리모델링 가능구조)

4. 사업시행기간 : 2023.02.20.(착공) ~ 2026.06.29.

5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

가.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
나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등

다.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전용허가

라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

6. 주요변경 내용

▫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결과 반영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
(당초 15,359.5㎡ → 변경 15,360㎡)

※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www.eum.go.kr)에서 열람가능하며 관련도서는 건축과 주택담당(☎054-950-635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<붙임1>

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2	좌학지구	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-1번지 일원	15,443.5	증) 0.5	15,444.0	

나.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위치	면적(㎡)	변경사유	비고
2	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-1번지 일원	15,443.5 →15,444.0 (증 0.5)	•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(구역 경계 변경 없음)	

2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용도지역 등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15,443.5	증) 0.5	15,444.0	100.0	
준주거지역	15,443.5	증) 0.5	15,444.0	100.0	
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해당없음)
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		획지	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위치	면적(㎡)			
	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계		15,443.5	증) 0.5	15,444.0		15,443.5	증) 0.5	15,444.0	
-	BL1	15,359.5	증) 0.5	15,360.0	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-1번지 일원	15,359.5	증) 0.5	15,360.0	공동주택 용지
-	-	84.0	-	84.0	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-4번지 일원	84.0	-	84.0	도로

※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(경계 변경 없음)
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위치	구분		계획내용
-	BL1	용 도	지정용도	• 「주택법」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
			불허용도	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• 20% 이하
		용적률		• 400% 이하
		높 이	최고높이	• 39층 이하
			최저높이	-
		배 치		• 탑상형과 판상형을 조화롭게 배치